

6.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범위 합리화(상증법 §13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 가산 <input type="checkbox"/> (합산대상) 상속개시 전 증여 재산가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상속인)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- (수유자)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- (기타*)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<p>* 상속인·수유자가 아닌 자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속취득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범위 합리화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- (기타) 합산 대상에서 제외

〈개정이유〉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사전증여재산 합산대상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〈경과조치〉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피상속인 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을 해당 수유자의 상속취득 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